

제주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1가합113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주영, 이정언

피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울

담당변호사 오군성, 이현정

변론 종결2022. 9. 23.

판결 선고2022. 10. 14.

주 문

1. 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고 A에 대하여 144,258,000원, 원고 B에 대하여 20,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144,258,000원, 원고 B에게 20,6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D의 아버지 E는 2007. 1. 10. 전기 통신 관련 기자재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7. 8. 26. 사망하였다. 이후 위 회사의 임원으로 2007. 9. 11. E의 부인 G가 대표이사, D가 이사로 각 취임하였고, 2019. 3. 29. 피고가 감사로 취임하였는데 실질적으로는 D가 위 회사의 제주시지사를, 피고가 위 회사의 서귀포본사를 각 운영하였다.

나. 원고 A은 2018. 5. 1. F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9.경 D의 부탁을 받고 이율은 연 5%로 하고 변제기는 정하지 아니한 채 D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여, D 명의 H은행 계좌로 2018. 9. 21. 200,000,000원, 2019. 3. 5. 15,000,000원,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9. 7. 11. 2,000,000원, 2019. 8. 10. 2,000,000원, 2019. 8. 16. 80,000,000원, 2019. 8. 20. 7,000,000원, 2019. 8. 28. 10,000,000원 합계 31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D는 2020. 8. 31.까지의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원고 A의 변제 독촉에도 나머지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 B은 2017. 2. 21. F에 입사한 후 2018. 8. 1.경 D가 운영하는 다른 개인사업체인 I으로 이직하여 근무하던 중 2020. 7. 6. D의 부탁을 받고, 변제기를 2020. 7.말로 정하여 D에게 20,6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D가 2020. 7.말이 되어도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B은 이율을 연 9.13%로 하고, 변제기는 정하지 아니한 채 위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하기로 D와 약정하였다. 그런데 D는 2020. 10.까지의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원고 B의 변제 독촉에도 나머지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들은 D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5146호(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로 위 각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D가 원고들의 주장을 다투지 아니하여 무변론으로 진행된 관련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1. 3. 18. 원고들의 각 청구취지대로 'D는, ① 원고 A에게 3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부터 2021. 1.

27.(관련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원고 B에게 2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부터 2021. 1. 27.까지는 연 9.13%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위 판결은 2021. 4. 8.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20. 10. 16. D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33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D와 체결하였고, 2020. 10. 27.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9호증,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D에 대하여 가지는 각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한 금전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이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9. 7. 11.부터 2019. 8. 28.까지 입금한 101,000,000원은 ① D가 아니라 F이 위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고, ② 위 원고와 F은 위 돈 중 81,000,000원만 변제되면 나머지는 면제되는 것으로 합의한 후 F이 2020. 12. 22.부터 2021. 11. 30.까지 위 원고에게 합계 8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101,000,000원은 원고 A의 피보전채권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① 채권자인 원고 A이 채무자인 D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사건에서 위 원고의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상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피고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② 또한, 피고의 위 주장을 '관련 사건의 기판력 표준시(무변론 판결이므로 선고일인 2021. 3. 18.) 이후 원고 A의 피보전채권을 일부 소멸시키는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설행하더라도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새로운 사유(원고 A과 F 사이의 합의 및 변제 등)의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¹⁾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나아가, 설령 피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 A의 피보전채권 원금 316,000,000원 중 101,000,000원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피보전채권(2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액수가 위 원고가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 가액인 144,258,000원)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고(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2) 앞서 든 증거들에 감정인 J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아이비케이기업은행, 제주세무서장, 국토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장, 제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20. 10. 16.경 무렵 D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시가 337,000,000원 상당)이 유일한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들에 대한 각 채무 합계 336,600,000원(=316,000,000원+20,600,000원) 외에도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196,742,000원, 지방소득세와 국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체납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미납 보험료 등이 존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한 이상, 상당한 가격에 매도하였는지 및 피고가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하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D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²⁾에 관한 것일 뿐, 피고의 선의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D가 형제이고, 위 두 사람은 아버지 E로부터 물려받은 F을 함께 운영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행위 당시 D가 위 회사 제주시지사의 운영난을 겪으며 자금부족에 시달리던 중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원고들은 D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을 보전하여 위하여 이 사건 매매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에 관한 판단

가.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그 자체의 반환 즉, 원물반환에 의하여야 하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27.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264,000,000원(실제 피담보채권액 196,742,000원)의 근저당권이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면서 같은 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K,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새로이 설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물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상회복은 원고들의 각 청구에 따라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의 범위

1)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 사실심 변론종결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을 비교하여 그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발생한 채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의 아이비케이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감정인 J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의 피담보채권액은 196,742,00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 위 부동산의 시가는 341,000,000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㉞ 따라서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144,258,000원(=341,000,000원~196,742,000원)이고,3) ㉞ 원고 A의 피보전채권액은 31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9.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며, 원고 B의 피보전채권액은 20,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그에 따른 가액배상은 원고 A에 대하여는 위 공동담보가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 B에 대하여는 위 피담보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각 이루어져야 한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16. 체결된 매매계약은, 원고 A에 대하여 144,258,000원, 원고 B에 대하여 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 A에게는 144,258,000원, 원고 B에게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6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되, 가집행 선고는 청구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붙이지 아니하여4)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재판장판사문종철

판사최석준

판사강미혜

별지

기준 그 이전(2020. 12. 22.부터 2021. 3. 2.까지)에 총 31,000,000원, 그 이후(2021. 7. 30.부터 2021. 11. 30.까지)에 총 50,000,000원이 각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만으로는 누가, 왜 위 돈을 입금한 것인지 알 수 없다.

2) 아울러,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시가 337,000,000원에 상당하는 대금 337,341,877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2년 여 전인 2018. 2. 14.부터 2020. 5. 28.까지 피고가 D에게 입금한 돈 총 94,962,740원과 ② D가 임의로 소비한 종친회 공금 15,375,500원에 대한 보전금, ③ 2020. 10. 16.부터 2020. 10. 27.까지 피고가 D에게 입금한 227,003,637원 등 총 337,341,877원(=94,962,740원+15,375,500원+227,003,637원)에 대한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매매계약 체결 전에 주고받은 돈이나 매도인이 임의로 소비한 공금 보전금 등을 매매대금으로 삼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을 제9,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가 2020.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등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계약에 따른 대금이 실제로 전부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3) 수익자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수익자의 취득액은 공동담보가액과 같다.

4)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참조